[별 첨 1]

전형별 세부 기준

□ 서류전형 평정항목 및 배점기준

항목	배점기준	점수
필수 서류 (30점)	서류 작성 양식 준수	30
	서류 작성 양식 미준수 (오기, 누락 등)	20
	▶ 서류 미비 및 응시 자격 부적격 시 불합격	
역량기술서 (20점)	작성	20
	미작성	0
운전능력 (30점)	운전 경력 15년 이상	30
	운전 경력 10년 이상	20
	운전 경력 10년 미만	10
거주기간 (20점)	적성면 거주 5년 이상	20
	적성면 거주 5년 미만	10
총점(100점)		

□ 면접전형 평정항목 및 배점기준

평가항목	반영비율 (100%)	매우우수	우수	보통	미흡
책임감	20%	20	18	16	14
성실함	20%	20	18	16	14
예의, 품행, 의사소통	20%	20	18	16	14
전문성 (장치 조작 등)	20%	20	18	16	14
신체 건강	20%	20	18	16	14
총점		100 만점 중 ()점			

[별 첨 2]

응 시 원 서

※ 지원분야 : ‘26년 ~ ‘27년 기간제 근로자(설해대책 제설지원)

사진부착 (6개월 이내 반명함판)	인적사항	성명	한 글		생년월일	
			한 자			
		현 주 소	(우:)			
		e-Mail		병역사항	필, 면제, 미필	
					기간: -	
		자택전화		휴 대 폰		

가점사항	☐ 법정가점(국가·독립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) ☐ 사회형평가점(수급자·장애인·한부모가족·북한이탈주민·다문화가족)

학력사항	학 교 명	재 학 기 간	전 공	수학구분	소재지
				졸업/재학/수료/중퇴	
				졸업/재학/수료/중퇴	
				졸업/재학/수료/중퇴	

경력사항	직 장 명	근 무 기 간	근무부서	담당업무	퇴직 사유

자격	자 격		
	자격명	취득일자	발급기관

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.

2026년 월 일

작성자 : (서명)

[별 첨 3]

역 량 기 술 서

※ 아래 항목에 대한 자신의 **역량, 노력 및 경험**을 **구체적으로** 기술하여 주십시오.
단, 출신학교, 가족관계 등 개인신상과 관련한 내용이 직·간접적으로 드러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
1. 책임감

예) 어떤 일을 추진하며 철저한 준비를 통해 성공적으로 그 일을 완수했던 경험 등

2. 성실함

예) 어떤 일을 추진하며 꾸준함과 성실함으로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경험 등

3. 대인관계

예) 조직 내 원활한 소통과 바른 태도를 보여준 경험 등

4. 관련 경력 사항

예) 장비나 기계를 다루는 과정에서 본인의 숙련도나 전문성이 발휘되었던 경험 등

5. 신체 건강

예) 장시간 근무나 야외 활동 등 힘든 환경에서도 맡은 일을 수행했던 경험 등

[별 첨 4]

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
파주시장은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고자 합니다.

☐ [필수]기본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내역

수집·이용 항목	수집-이용 목적	보유기간
성명, 국적, 주소, 생년월일, 연락처, 계좌은행, 계좌번호, 전자우편주소, 학력, 학위, 수상실적, 경력·재직사항, 가족사항, 차량번호	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, 급여지급,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·복무 기록관리, 청사출입관리	근로관계 종료 후 3년

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

☐ 동의함 ☐ 동의하지 않음

☐ [필수] 민감정보 수집·이용 내역

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	수집·이용 목적	보유기간
국가유공자정보, 장애정보, 북한이탈주민정보	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, 법적사무처리	근로관계 종료 후 3년

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

☐ 동의함 ☐ 동의하지 않음

☐ [필수] 기본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내역

수집·이용 항목	수집.이용 목적	보유기간
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연락처, 전자우편주소	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	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0년

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

☐ 동의함 ☐ 동의하지 않음

※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20 년 월 일

성명: (서명 또는 인)

파주시장 귀하

[별 첨 5]

공정채용 확인서

파주시는 채용비리 방지를 위해 기관 종사자의 친인척 채용 등의 불공정 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지원자 본인의 확인을 받고자 하오니,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친인척 관계(배우자, 4촌이내의 혈족과 인척)의 직원이 있을 경우, 1번, 2번, 3번 작성
※ 친인척 관계(배우자, 4촌이내의 혈족과 인척)의 직원이 없을 경우, 1번만 작성

1. 파주시에 본인의 4촌 이내 친척이 근무하고 (있다./ 없다.)
2. **친척 관계에 있다면**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
연번	성명 (본인)	친인척 직원					
		성명	소속기관	부서명	직급	본인과의 관계	기타

3. 재직 중인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있다면 해당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다. (그렇다./아니다.)
4. 본인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하였다.(그렇다./아니다.)
5. 허위, 위조 등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였다.(그렇다./아니다.)
6. 채용 담당자가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채용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였다.(그렇다./아니다.)

기재사항은 모두 사실이며, 추후 채용비리 사항이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입사가 취소됨을 확인합니다. 또한 본 확인서 작성 시에 인지하지 못한 친·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입사가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.

[개인정보의 수집.이용 고지]
① 수집·이용 목적
- 채용비리 여부 조사, 파주시 홈페이지 친인척 채용현황 게시, 감사자료 작성

② 수집·이용 항목
- 친인척 직원 성명, 소속부서, 직급, 파주시 직원과의 관계

③ 보유기간 : 재직기간 동안 보유

파주시장 귀하

[별 첨 6]

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(확인서)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상 **비위면직자등**은 **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**되어(제82조)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**형사처벌**(제89조,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) 및 **해임요구**(제83조)를 받게 되므로,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

<해당되는 문항 □에 체크>

1. **공직자**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*공직자: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「국가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·임용·교육훈련·복무·보수·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, 「공직자윤리법」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	해당 □ 비해당 □
2. **'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'**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(다만, 적발 시기는 재직 중, 퇴직 후 불문) * 부패행위 :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.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. 공공기관의 예산사용,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·관리·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.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행위 * (예시) 성희롱, 성매매, 음주운전, 폭행, 단순업무상 과실, 복무위반, 불성실: 비해당 금품요구, 편의수수, 공금횡령, 공용물 사적사용, 수당·여비 부당수령: 해당	해당 □ 비해당 □
3-1. **해당 부패행위**로 **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**된 사실이 있는지	해당 □ 비해당 □
3-2. 위 **퇴직일**(당연퇴직 · 파면 · 해임일)로부터 **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** ⇒ 취업제한대상자 해당(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)	해당 □ 비해당 □
4-1. 해당 부패행위로 **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**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	해당 □ 비해당 □
4-2. 그 형의 **집행이 종료된 날**(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)부터 **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**(5년 내)	해당 □ 비해당 □
4-3. 권익위법('16.3.29. 제14145호로) 시행('16.9.30.)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⇒ 취업제한대상자 해당(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, 부칙 제2조)	해당 □ 비해당 □
1, 2, 3-1, 3-2 (모두 충족) ⇒ 취업제한대상자(제82조 제1항 제1호)	해당 □
1, 2, 4-1, 4-2, 4-3 (모두 충족) ⇒ 취업제한대상자(제82조 제1항 제2호)	해당 □

※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.

20 년 월 일

생년월일 . . . 지 원 자 (서명)